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 '99. 9.

제 출 자 : 동두천시장

☐ 제안이유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추진계획에 의하여 시본청의 기구를 현행 15개실·과에서 14개 실·과로 축소 조정하여 유사 중복사무의 일원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고 동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시본청의 기구를 현행 15개 실·과에서 14개 실·과로 축소 조정함.

○ 사회진흥과 + 민방위재난관리과⇒민간협력과

나. 기구축소에 따른 실·과별 분장사무를 조정함.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진흥과”를 “민간협력과”로, “수도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수도과”로 하고, 동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동항 제7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동항 제1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동항 제13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동항 제15호를 삭제한다.

4. 민간협력과

- 가. 민간협력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나. 새마을사업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 다.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라. 청소년 보호육성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 마. 제2의건국에 관한 사항
- 바. 민방위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사. 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아. 민방위대 동원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하. 병사 징·소집 및 병력동원 훈련에 관한 사항

사. 재난 및 재해에 관한 사항

마. 불량환경개선 및 광고물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바. 특수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동두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민간협력과장”으로 한다.

②동두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총무과장”을 “민간협력과장”으로 한다.

③동두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사회진흥과장”을 “민간협력과장”으로 한다.

④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사회진흥과장”을 “민간협력과장”으로 한다.

⑤ 동두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사회진흥과장”을 “민간협력과장”으로 한다.

⑥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중 “재난관리담당”을 “방재담당”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5 ~ 6(생략)	5 ~ 6(현행과 같음)
7. 민원봉사과 가 ~ 파(생략) (신설)	7. 민원봉사과 가 ~ 파(현행과 같음) <u>하. 병사 징·소집 및 병력동원 훈련에 관한 사항</u>
8 ~ 11(생략)	8 ~ 11(현행과 같음)
12. 건설과 가 ~ 바(생략) (신설)	12. 건설과 가 ~ 바(현행과 같음) <u>사. 재난 및 재해에 관한 사항</u>
13. 도시과 가 ~ 라(생략) (신설)	13. 도시과 가 ~ 라(현행과 같음) <u>마. 불량 환경개선 및 광고물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u> <u>바. 특수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u>
15. 민방위재난관리과 <u>가. 민방위서설 및 장비 유지관리</u> <u>나. 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교육훈련</u> <u>다. 민방위대 동원 및 비상대책 업무</u> <u>라. 병사 징·소집 및 병력동원 훈련</u> <u>마. 지역단위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u>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과의 설치)①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u>사회진흥과</u>,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②(생략) 1 ~ 3 (생략) 4. <u>사회진흥과</u> 가. 새마을사업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나. 불량 환경개선 및 광고물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특수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라. 청소년 보호육성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실·과의 설치) ①----- ----- -----<u>민간협력과</u>----- ----- -----<u>수도과</u>----- -----. ②(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u>민간협력과</u> 가. <u>민간협력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나. <u>새마을사업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u> 다. <u>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u> 라. <u>청소년 보호육성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u> 마. <u>제2의건국에 관한 사항</u> 바. <u>민방위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 사. <u>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u> 아. <u>민방위대 동원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u>